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0가합570901(본소), 2022가합543798(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망 A의 소송수계 신청인 망 A의 유언집행자 B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재단법인 C

원고(반소피고) D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 및 원고,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 김태용, 박상현, 배슬기

피고(반소원고)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현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변 론 종 결 2024. 7. 16.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의 청구 부분, 이 사건 반소 중 별지1 기재 ① 망인의 예금 내역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E은 32,382,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F는 111,222,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E에게 서울 종로구 G 대 509.1㎡ 중 2,803,948,542/103,917,492,0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반소원고) F에게 서울 종로구 G 대 509.1㎡ 중 260,173,593/103,917,492,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2.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의 2021. 3. 29.자 소송수계허가를 취소하고,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법무법인 화현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50%, 피고(반소원고)들이 50%씩 각 부담하고,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E은,

가. 원고에게,

1) 서울 종로구 G 대 509.1㎡ 중 58,051,308/3,848,796,000 지분에 관하여 2021. 7.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48,574,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에게 주문 제2의 가항 및 서울 종로구 G 대 509.1㎡

중 38,700,872/3,848,796,000 지분에 관하여 2021. 7.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 F는,

가. 원고에게,

1) 서울 종로구 G 대 509.1㎡ 중 199,382,429/3,848,796,000 지분에 관하여 2021.7.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166,833,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에게 주문 제2의 나항 및 서울 종로구 G 대 509.1㎡ 중

132,921,619/3,848,796,000 지분에 관하여 2021. 7.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1. 별지1 기재 각 예금 채권1) 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서울 종로구 G 대 509.1㎡ 중 각 3/54 지분에 관하여

2019. 2.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반소원고)들은 반소장 및

2022. 10. 18.자 보정서를 통해 서울 종로구 G 대 509.1㎡(이하 'G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7.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에 G 대지만을 기재하고, 변경된 청구원인에서도 G 대지에 관하여만

주장하였다. 피고(반소원고)들이 2024. 6. 27.자 조정안에서 G 대지의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반소원고) F에게 마쳐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정에 관한

의견으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취지와도 다른 점, 피상속인 망 H의 G 대지와 그지상건물의 각 소유지분이 다른 점(망 H은 2004. 6. 16. 망 A으로부터 G 대지와 그지상건물 전체 지분에 관하여 증여받았다가, 2004. 8. 25. G 대지에 관하여만 증여를 일부해제하고 2004. 8. 30.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피상속인 망 H의 유언증서에도 G 대지 중 1/3이라고 명시된 점, 원고(반소피고)가 G 대지의 지상건물에 관하여 유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이후 피고(반소원고)들이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G 대지의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A과 망 H(이하 망 H을 '망인'이라고 한다)은 혼인하여, 원고(반소피고) D(이하 '원고 D'이라고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 F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9. 2. 13.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8. 3. 1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

유언장

나 H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해주길 바란다.

G 1/3 대지와 예금자산 근 10억 전액을 딸 F와 둘째아들 E에게 상속한다.

다. 망 A의 사망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21. 사망하였다. 망 A은 2018. 5. 29.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언공정증서

1. 유언자는 유언의 집행자로 다음의 사람을 지정하였다.

B

1. 유언자 및 증인은 다음과 같다.

유언자 A

증인 L, J

유언의 취지

1. 부동산

용인시 처인구 K 입야 7,041㎡

위 유언자 소유의 부동산을 D에게 유증한다.

2. 금 1억 원

이 금원을 D에게 유증한다.

D은 이 금원을 유증받은 즉시, 생전에 유언자를 도와준 사람(들)의 '명단' 및 그 '몫'(액수)을 정하여, 그(들)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3. 나머지 재산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재단법인 C(이하 '원고 C'라고 한다)에 유증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어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인에게 수계자격이없는 경우는 위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일단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킨경우에도 그 후에 자격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수계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은 망 A이 2020. 11. 21. 사망하자, 2021. 2. 16.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3.29.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A이 용인시 처인구 L 임야 7,041㎡와 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원고 C에 포괄유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물인 망 A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원고 C에 귀속되었고, 망 M의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있는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은 적법한 소송수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위법하므로 이 법원의 2021. 3.29.자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망 A은 2020. 11. 21.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중증 노인성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송의사와 소송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망 A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아 망 A의 소송당사자 지위를 수계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위임에 관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9.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법무법인 화현이 2020. 8. 7.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위임장(2020. 8.자)에 망 A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망 A의 이름 옆에 망 A의 도장(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7 내지 17, 20 내지 29, 3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영상, N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2) 망 A은 소송위임 및 소제기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망 A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N협회 의료감정원은 “2017. 9. 검사결과 망인의 GDS 4점, K-MMSE 21점은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로 평가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K-MMSE 21점은 망인의 학력(대졸)과 당시 나이를 고려하면 경계선 수준의 인지기능으로 심각한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를 시사하는 점수는 아니겠으나, GDS 4점은 일반적으로 혼자서 여행하는 것과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자신의 중요한 과거사를 잊기도 하거나, 더 이상 복잡한 일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어 독립적인 사회활동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태로,

판단능력에 저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답하였다. “2019. 4. 2. 검사결과 망인의MMSE 18점, cerad-k, CDR 2점, GDS 6점은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로 평가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MMSE는 18점으로 경계선 수준이나 cerad-k에서 집중력, 지남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실행력, 전체적 인지능력 영역 모두에서 저명한 저하 소견이 있고, CDR 2점 및 GDS 6점은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 점수임을 확인가능함”, “GDS 6점은 보통 환자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이름을 종종 잊거나, 최근 사건들이나 경험들을 거의 기억 못하고, 일반적으로 주변 상황, 년도, 계절을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 예로 대소변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인지기능 수준임.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였을 때, 망인은 당시 기억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전두엽 실행기능의 현저한 저하가 시사되는 바, 판단능력은 상당부분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됨”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N협회 의료감정원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8. 7.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하기 직전인 2020. 9. 1. 당시의 망 A의의사능력에 관하여 “당시 망 A은 섬망증상이 있던 상태로 보여지며, 당시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송을 위임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특히 N협회 의료감정원은 “2020. 8. 7. 당시 망 A에게 위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송을 위임할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이 사건 소제기당시의 망 A의 의사능력을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2020. 8. 7. 무렵 시행된 인지기능 평가가 없어 당시의 망 A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망 A은 2017년부터 조기 치매로 판단되어 치매약을 사용해온 점, 2019. 4. 2. 시행된 PET검사에서 amyloid 양성으로 확인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점,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진적인 인지기능의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신경 질환으로 유병기간이 오래될수록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점차 떨어지는데, 망 A은 2019. 4. 2. CDR 2점으로 사회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였고, 2020. 8. 7.에는 시간이 경과하여 알츠하이머 치매가 더욱 진행되었을 가능성과 더불어 그 무렵 신체적 상해의 악화로 섬망상태 등이 동반되어 인지기능의 저하가더 심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 D, 피고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 O은 '망 A이 2019. 5. 말경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는 기록만으로판단하기 어렵지만, 2019. 5. 8. 발행된 소견서(을 제28호증)에 의하면, 망 A은 당시 배우자의 장기적 입원에 대한 우울증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덧붙여 있는 것으로 진단된바, 이러한 경우가 사실이라면 치매증세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소견서에 의하면, 2019. 12. 말경 테스트상에서 중등도 치매 수준인 CDR 2점, 심한 치매를 의미하는 GDS 5~6점을 받았고, 이는 망 A이 적어도 당시에 중등도 이상의 치매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내의 재산을 돌려받아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문구를 이해할 만큼의 의사능력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망 A에 대한 2020. 9. 1. 의료기록으로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의료기록을 보면 당시 정신상태가 혼돈 상태이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8월부터 잘 못 먹고 안좋은 상태가 9월까지 계속되어 나타난 것이라면 이미 중증의 치매가 진행되어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망 A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에 대한 소송위임은 의사능력 없는 자의 위임이므로 망 A의 이 사건 청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바, 망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망 A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아 소송절차를 수계한 원고 C의 청구는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망 A으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화현이 부담한다.3)

나. 반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 D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 D은 이 사건 유언에 따라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과 망인 명의의 별지2 기재 금융자산 중 ①항의 예금자산(이하 '이 사건 예금자산'이라고 한다)이 피고들에게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D에게 G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예금자산에 포함된 별지1 기재 ① 망인의 예금 내역이 피고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원고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류분을 산정하면서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이 피고들에게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확인의 소와 달리 원고 D이 위 유증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D에게 G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필요성이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G 대지에 관한 원고 D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류분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예금자산이 피고들에게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예금자산은 별지1 기재 ① 망인의 예금 내역과 사이에 P은행 예금계좌에서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예금자산 중에서 P은행 예금계좌 6곳에 예치되었던 돈을 피고 F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보관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자산의 귀속에대하여는 원고 D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D과 피고들 사이에는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이 이 사건 유언에 따른 유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다툼이 있을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이 사건 예금자산에 포함되는 별지1 기재 ① 망인의 예금 내역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의 주장

1) 본소 청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재산액은 4,939,270,188원이고,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 D의 유류분 비율은 1/9이므로 원고 D의 유류분액은 548,807, 799원이다.

그런데 원고 D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233,580,034원을 상속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315,227,764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D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받은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은 이미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을 포함하여 별지2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이하 '이 사건 기타자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유언에 따른 유증의 범위에속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되어 망 A, 원고 D,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본소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망인은 2019. 2. 13. 사망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9. 6. 21. 망 A, 원고 D과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검인기일을 실시하여 망인의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원고 D은 적어도 2019. 6. 21. 망인의 재산 대부분이 피고들에게 유증된 사실 및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할 것임을 알았음이 명백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8. 7.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 D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반소 청구

망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고들에게 G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과 망인의 이 사건 예금자산, 기타자산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하였다.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은 원고 D의 상속등기로 인해 망 A에게 $3/27 (= 1/3 \times 3/9)$, 원고 D에게 $2/27 (= 1/3 \times 2/9)$, 피고들에게 각 $2/27 (= 1/3 \times 2/9)$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망 A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A의 $3/27$ 지분은 원고 D과 피고들이 각 $1/27$ 지분씩 상속받았다. 이에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 중 현재 원고 D의 지분은 $3/27 (= 2/27 + 1/27)$ 인바, 위 지분의 $1/2$ 씩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 D은 피고들에게 G 대지에 관하여 각 $3/5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망인의 예금재산이 근 10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1에 기재된 망인의 예금내역과 금융자산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D은 피고들이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의소유권이 각 1/2씩 피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5. 반소에 관한 판단

본소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원고 D와 피고들 사이에는 망인이 이 사건 기타자산을 피고들에게 유증하였지에 관한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피고들의 반소를 먼저 판단한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언에 의하면,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이 피고들에게 각 1/2씩유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9. 6. 5.접수 제18677호로 2019. 2.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A에게 3/27 지분, 원고 D와피고들에게 각 2/2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원고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G 대지에 관한 2/27 지분을 각 1/27 지분씩 2019. 2. 13.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원고 D 명의의 상속등기는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유증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원고 D의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한편,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수증자나 수유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항변의 형식으로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그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추상적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하여 유류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D은 본소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D 명의의 G 대지에 관한 2/27 지분 중 원고 D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뒤의 본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대지에 관하여 피고 E이 원고 D에게 부담하는 유류분 반환범위는 38,698,054/3,848,796,000 지분이다. G 대지에 관한 원고 D 명의의 1/27 지분에서 위 38,698,054/3,848,796,000 지분을 제외하면, 2,803,948,542/103,917,492,000 지분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 D은 피고 E에게 G 대지 중 2,803,948,542/103,917,492,000 지분에 관하여 2019. 2.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뒤의 본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대지에 관하여 피고 F가 원고 D에게 부담하는 유류분 반환범위는 132,911,941/3,848,796,000 지분이다. G 대지에 관한 원고 D 명의의 1/27 지분에서 위 132,911,941/ 3,848,796,000 지분을 제외하면, 260,173,593/103,917,492,000 지분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 D은 피고 F에게 G 대지 중 260,173,593/103,917,492,000 지분에 관하여 2019. 2.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망 A 명의의 G 대지에 관한 3/27 지분이 망 A이 2020. 11. 21. 사망함에 따라 원고 D과 피고들에게 각 1/27 지분씩 상속되었으므로 원고 D이 위 1/27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1/5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A 명의의 G 대지에 관한 3/27 지분 상속등기는 이 사건 유언에 반하는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나, 피고들은 망 A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원고 D에게 위 3/27 지분 중 1/27 지분에 관하여 유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의 G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에 관한 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언증서에 망인의 예금자산 근 10억 원 전액을 피고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D은 이 사건 유언의 범위는 별지1 기재 ① 망인의 예금 내역에 한정되고, 4)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위 유증의 범위에 별지1 기재 반소 망인의 자산 목록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망인의 예금자산이 근 10억 원이라고 기재된 점, 별지1 기재 ① 망인의 예금 내역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정되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예금 총액(별지2의 이 사건 예금자산)이 1,073,494,499원이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점,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은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 상장주식, 보험금, 호텔 피트니스회원권으로 예금계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하여 망인이 피고들에게 유증한 망인의 예금자산 근 10억 원은 별지1 기재 ① 망인의 예금 내역을 포함한 별지2의 이 사건 예금자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에 관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6.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는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유류분 부족액} &= [\text{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times \text{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 &\quad \text{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text{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 \text{A} &= \text{적극적 상속재산액} + \text{증여재산액} - \text{상속채무액} \\ \text{B} &= \text{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text{C} &= \text{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text{수유액} \\ \text{D} &= \text{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text{상속채무 부담액} \end{aligned}$$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액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Q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07,536,654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예금자산 중 P은행 계좌에 예치되었던 금액 중 현재 피고 F 명의의 계좌에 보관중인 90,652,284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 사건 기타자산 중 R증권에 예치되었다가 현재 피고 F 명의의 계좌에 보관중인 212,377,850원 전액, S증권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세금 납부로 사용된 143,839,928원 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적 상속재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항목	순번	내용	상속재산 가액
부동산	1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	1,282,932,000
	2	G 대지 지상건물	28,709,000
이 사건 예금자산	3	T은행(계좌번호 1 생략)	77,675,743
	4	T은행(계좌번호 2 생략)	51,840,753
	5	U은행(계좌번호 3 생략)	20,000,000
	6	U은행(계좌번호 4 생략)	1,000,000
	7	U은행(계좌번호 5 생략)	172,518,389

항목	순번	내용	상속재산 가액
8	V은행(계좌번호 6 생략)	4,008	
9	V은행(계좌번호 7 생략)	269,364,608	
10	V은행(계좌번호 8 생략)	4,072,903	
11	V은행(계좌번호 9 생략)	4,532	
12	P은행(계좌번호 10 생략)	4,410,786	
13	P은행(계좌번호 11 생략)	13,403,252	
14	P은행(계좌번호 12 생략)	6,899,143	
15	P은행(계좌번호 13 생략)	15,000,000	
16	P은행(계좌번호 14 생략)	369,815,864	
17	P은행(계좌번호 15 생략)	67,483,555	
18	기업은행(계좌번호 16 생략)	963	
19	W증권(계좌번호 17 생략)	3,666	
이 사건 기타자산	20	X증권(계좌번호 18 생략)	149,002,547
21	X증권(계좌번호 19 생략)	225	
22	Y증권(계좌번호 20 생략)	215	
23	Z증권(계좌번호 21 생략)	191,090,130	
24	R 계좌(계좌번호 22 생략)	212,253,640	
25	R 계좌(계좌번호 23 생략)	124,210	
26	S증권 계좌(계좌번호 24 생략)	2,961,601	
27	S증권 계좌(계좌번호 25 생략)	140,878,327	
28	AA 주식 2,000주(1주당 가격 35,257원)	70,514,000	
29	AB 주식 225주(1주당 가격 4,860원)	1,093,500	
30	AC 보험금(증권번호: AD)	95,239,547	
31	AC 보험금(증권번호: AE)	95,239,547	
32	AF 피트니스회원권(여자개인)	64,000,000	
합 계	3,407,536,654		

나) 피고 F에 대한 증여재산액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F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1,531,733,534원이다.

순번	내용	상속재산 가액
1	2015. 4. 28. 증여한 G 대지에 관한 1/3 지분	1,282,932,000(증여일인 2015. 4. 28.을 기준으로 한 G 대지에 관한 1/3 지분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감정인 Q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일인 2019. 2. 13. 기준 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인정하였다.
2	2017년 현금 증여	248,801,534
합계	1,531,733,534	

다) 상속채무액: 해당없음

라) 소결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4,939,270,188원(= 3,407,536,654원 + 1,531,733,534원)이다.

3) 유류분 비율(B): 1/9

4) 원고 D의 특별수익액(C): 해당없음

5) 원고 D의 순상속분액(D)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D이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은 G 대지 지상건물 28,709,000원과 이 사건 기타자산 1,022,401,155원의 합계 1,051,110,155원에서 원고 D의 상속지분비율 2/9에 해당하는 233,580,034원(원 미만 버림)이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 D의 유류분 부족액은 315,227,764원(= 원고 D의 유류분액 548,807,798원7)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D의 순상속분액 233,580,034원)이다.

나.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1) 피고들의 유류분초과액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각 유증·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분담비율, 반환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반환의무자	수증재산 가액	고유의 유류분액	유류분 초과액	분담비율8)=반환의무자 별 유류분 초과액/반환의무자별 유류분 초과액 합계 2,790,544,437원.	유류분 반환액9)= 원고 D의 유류분 부족액 315,227,764원 × 각 피고별 분담비율. 각 피고별 분담비율은 소속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피고 E는 0.2255, 피고 F는 0.7745로 보고 각 피고별 유류분 반환액을 계산하였으며, 피고 E의 유류분 반환액은 71,083, 860.7원에서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피고 E	1,178,213,24910)=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 가액 1,282,932,000원 + 이 사건 예금자산 가액 1,073,494,499) X 1/2. 원 미만 버림.	548,807,798	629,405,451	0.225549338	71,083,861
피고 F	2,709,946,78411)=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 가액 1,282,932,000원 + 이 사건 예금자산 가액 1,073,494,499) X 1/2(원 미만 올림)] + G 대지 1/3 지분 가액 1,282,932,000원 + 현금 증여 248,801,534원.	548,807,798	2,161,138,986	0.774450662	244,143,903
합 계	3,888,160,033	1,097,615,596	2,790,544,437	1	315,227,764

2) 유류분 반환 방법

가) 관련 법리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D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물반환이 가능한 수유재산인 G 대지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하고 이를 각 피고별로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E]

수증재산 내역	상속개시 당시 가액	반환비율12)= 개별 수증재산 가액/수증재산 가액 합계액.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은 0.5444, 이 사건 예금자산은 0.4556으로 본다. 피고 F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반환액 안분13)= 피고 E의 유류분 반환액 71,083,861원 X 반환비율.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반환지분 또는 반환액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641,466,000	0.54444	38,698,054	38,698,054 /3,848,796,000

수증재산 내역	상속개시 당시 가액	반환비율12)= 개별 수증재산 가액/수증재산 가액 합계액.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은 0.5444, 이 사건 예금자산은 0.4556으로 본다. 피고 F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반환액 안분13)= 피고 E의 유류분 반환액 71,083,861원 X 반환비율.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반환지분 또는 반환액
지분 중 1/2 지분				
이 사건 예금자산의 1/2	536,747,25014)이 사건 예금자산 1,073,494,499원의 1/2은 536,747,249.5원이고,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0.45556	32,385,807	32,385,807
합 계	1,178,213,250	1	71,083,861	-

[피고 F]

수증재산 내역	상속개시 당시 가액	반환비율	반환액 안분15)= 피고 F의 유류분 반환액 244,143,903원 X 반환비율.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반환지분 또는 반환액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 중 1/2 지분	641,466,000	0.54444	132,911,941	132,911,941 /3,848,796,000
이 사건 예금자산의 1/2	536,747,250	0.45556	111,231,962	111,231,962
합 계	1,178,213,250	1	244,143,903	-

그런데 G 대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1/3 지분 중 2/27 지분에 관하여 2019. 2.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미 원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실체관계에부합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G 대지에 관하여 원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27 지분과 피고들이 원고 D에게 각 유류분 반환하여야 하는 지분을 비교하면, 이미 원고 D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27 지분이 더 큰 사실은 앞서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D은 이미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G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으므로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2021. 7.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한편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9. 10. 1. 망 A과 원고 D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9042호), 망 A과 원고 D은 2019. 11.경 '망인의 유언증서에 의한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소로써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답변서가 2019. 11. 20.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D은 비록 유언효력확인 소에서 반소로써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위 답변서의 제출 및 송달로써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D에게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예금자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액인 32,382,989원16푼 이에 대하여 2021.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는 원고 D에게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예금자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액인

111,222,284원17뿔 이에 대하여 2021.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이 사건 본소 중 원고 C의 청구 부분, 이 사건 반소 중 별지1 기재 ① 망인의 예금내역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며, 이 사건 본소 중 원고 D의금전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기각하기로 하며, 이 사건 반소 중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별지1 기재 ②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에 관한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 법원의 2021. 3. 29.자 소송수계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강대현 판사 백승영

별지

- 1)망인의 예금 내역과 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을 모두 포함한다.
- 2)원고 C는 2019. 5.하순경 원고 D에게 유언증서 검인기일통지서가 송달된 때 원고 D이 망 A에게 망인의 자필유언을 보여주자 망 A이 서운함을 표시하여 망인의 유산을 찾아와 원고 C에 기증할 뜻을 밝혔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망 A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의 주장 경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C의주장사실만으로 2019. 5.경의 망 A의 의사에 기하여 법무법인 화현이 2020. 8.경 소송대리권을 수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본문의 ① 내지 ③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9. 5.경에도 망 A은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위임할 수 있는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3)법무법인 화현은 2021. 2.자 원고 C의 소송위임장을 2023. 1. 30. 제출한 바 있으나, 원고 C는 망

A의 포괄수유자로서 망 A과 법무법인 화현 사이의 위임관계의 흠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정확하게는 별지2의 이 사건 예금자산을 의미한다. 망인의 자산 목록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별지1과 원고 D이 주장하는 별지2는 그 내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피고들이 별지2 본소 망인의 자산 목록 중 피고 F가 인출하여 소비하고 보관하고 있는 일부 내역을 제외하고 별지1 반소 망인의 자산 목록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즉, 별지2는 별지1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5)감정인 Q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인 2019. 2. 13.을 기준으로 한 G 대지에 관한 감정결과는 3,848,796,000원으로, 그중 망인의 1/3 지분의 가액이다.

6)증여일인 2015. 4. 28.을 기준으로 한 G 대지에 관한 1/3 지분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감정인 Q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일인 2019. 2. 13. 기준 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인정하였다.

7)=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4,939,270,188원 X 원고 D의 유류분 비율 1/9. 원 미만 버림.

8)=반환의무자별 유류분 초과액/반환의무자별 유류분 초과액 합계 2,790,544,437원.

9)= 원고 D의 유류분 부족액 315,227,764원 × 각 피고별 분담비율. 각 피고별 분담비율은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피고 E는 0.2255, 피고 F는 0.7745로 보고 각 피고별 유류분 반환액을 계산하였으며, 피고 E의 유류분 반환액은 71,083,860.7원에서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10)=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 가액 1,282,932,000원 + 이 사건 예금자산 가액 1,073,494,499) X 1/2. 원 미만 버림.

11)=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 가액 1,282,932,000원 + 이 사건 예금자산 가액 1,073,494,499) X 1/2(원 미만 올림)] + G 대지 1/3 지분 가액 1,282,932,000원 + 현금 증여 248,801,534원.

12)= 개별 수증재산 가액/수증재산 가액 합계액.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G 대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은 0.5444, 이 사건 예금자산은 0.4556으로 본다. 피고 F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3)= 피고 E의 유류분 반환액 71,083,861원 X 반환비율.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14)이 사건 예금자산 1,073,494,499원의 1/2은 536,747,249.5원이고,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15)= 피고 F의 유류분 반환액 244,143,903원 X 반환비율.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16)앞서 인정한 금액 32,385,807원에서 2,818원이 부족하다.

17)앞서 인정한 금액 111,231,962원에서 9,678원이 부족하다.